



고민없는 무상증여 지분처리의 위험성(3)

대주주와 회사의 주식거래, 이런 점 주의하라

글 / 조 완 석 (공인회계사)

설립 후 3기째 계속 결손상태인 회사가 있다. 이에 대주주가 무상으로 보유주식 1만주를 회사에 증여하였다. 증여 당시 주식의 세무상 평가액은 주당 300원이며, 액면가액은 주당 500원이었다. 이러한 자기주식 무상증여 시에 발생 가능한 세무상 위험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세무상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크게 세목별로 구분해보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다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부담 위험 발생

첫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세무상 평가액인 주당 300원과 증여가액인 주당 500원과의 차액인 주당 200원을 총 1만주에 해당하는 가액 200만원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해당되는 세목은 소득세법으로 위의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익금산입 가액과 동일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7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주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상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회사와 대주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목으로서 대주주가 회사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고자 하던 의도와는 달리 세법에 의하는 경우 회사는 법인세 부담 위험이 발생하며 대주주는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회사와 대주주간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위와 같은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사는 이러한 사항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분율만큼 증여이익 발생할 수도

마지막으로 거래당사자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거래로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회사의 기타 주주들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다. 이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결손금이 있는 회사 등에 대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에 자신의 재산 등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대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 상승분만큼 기타의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회사가 이익을 얻는 300만원에 대한 개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해 세무상 여러가지 위험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위험은 회사가 회계처리한 방법과는 별개로 개별 세법에 따라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와 회사와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